2019년도 제10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o 일 시 : 2019. 7. 9.(화요일), 10:00

o 장 소 : 보호원 9층 회의실

o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2명 참석

- 심의위원 : 박성호, 임진모(분과위원장 대행) 위원

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Ⅱ.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o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 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304건(안건번호 제2019-65467호~66003호)
 - 회의결과: 음원파일 등을 무단 이용한 영상물을 제공하는 게시물 1건(안건번호 제2019-65467호)은 복제·전송자가 한 곡 전체분량의 음원파일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가결함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올린 링크 설정 게시물 4건(안건번호 제 2019-66000호~66003호)은 웹호스팅사업자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바람 직해 보이므로 가결함

나머지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1,299건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 만을 권고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 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o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108회 저작권 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19-105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전차 회의록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A 위원 : 회의록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음
- B 위원 : 원안에 이견 없이 그대로 공개하자는 의견임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회의록을 공개하기로 결정함

3. 안건상정

- o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 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 금일 심의대상 안건은 안건번호 제2019-65467호~66003호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모두 1,304건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65467호는 보호원이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블로그에서 '따르릉(가수 : 홍진영)'의 음원을 배경음악으로 이용한 동영상과 해당 곡의 가사 전 부를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사진 13장을 슬라이드 쇼(slide show) 방식으로 제공하면서 배경음악으로 해당 곡의 전체분량(3분 22초)을 이용하였음

해당 영상의 재생 회수는 현재 약 500회이고, 해당 게시판에는 본 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약 350건의 음악저작물을 제공하고 있음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19-65467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 사진에 등장하는 모델은 모두 동일인인 것으로 보임
- B 위원 : 사진 속 인물은 모두 같은 사람으로 보이고 중국계 모델로 보임
- 성원영 전문위원 : (영상물의 사진을 제시하면서)출처가 명시되지 않 았고, 사진을 찍은 사람이나 모델의 이름도 확인되지 아니함 13장의 사진은 모델이 포즈를 취하고 촬영자가 구도를 잡아 촬영한 후 사진의 수정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큼

(사진이 교체되는 부분을 보여주면서)사진이 교체되는 방법이나 방향이 슬라이드 별로 다름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

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함

소재저작물 저작권자의 허락이 편집저작물의 성립요건은 아님

- B 위원: '유튜브'에서 유사한 방식의 동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음 배경이 되는 음원은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이용했다고 보더라도, 영상 부분은 사진을 슬라이드 쇼 방식으로 보여주는 서비스를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함
- A 위원 : 게다가 사진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저작권자의 신고나 이의제 기가 있지 않는 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닌 것으로 보 임
- B 위원 : 같은 생각임

본 안건에서는 음악저작물과 관련해서 시정권고 가부를 판단해야 할 것 으로 사료됨

음악저작물 한 곡 전체분량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정권고를 하는 것에 가결 의견임

- A 위원 : 편집저작물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것이 분명하므로 시정권고 가결 의결임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안건번호 제2019-65467호는 만장일치로 시 정 조치의 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

에게 안건번호 제2019-66000호~66003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민원인 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사이트 전체를 신고한 건으로, 보호원이 심의 대상 게시물을 특정해 심의를 요청하였음

국내 사이트인 '○○○' 사이트 운영자가 국내외 영화, 웹툰이 제공되는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한 게시물을 직접 올린 사안임해당 사이트는 사행성 게임 베팅에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스포츠 경기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회원가입, 게임 베팅, 출석체크, 게시글 작성 등을 통해 '경험치'를 얻을 수 있고, 사이트 이용자는 이 '경험치'를 이용해 영화나 웹툰 불법 복제물을 이용할 수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마치 게시판인 것처럼 보이지만, 일반적인 게시판과 다름

보통 게시판은 게시물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게시물 내용을 보여주는 화면으로 넘어가는데 심의대상 게시물은 해당 게시물 화면에서 바로 영화가 스트리밍 되고 게시물의 url 주소도 바뀌지 않음 즉 하나의 게시물에 수백 개 링크가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A 위원 : 국내 사이트인데 그렇다면 운영자 정보를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운영자 정보를 알 수 없었고, 위 사이트 이용자는 회원가입을 하여 로그인을 하더라도 '영화/웹툰' 게시판에 글을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사이트 운영자가 직접 심의 대상 게시물을 올렸을 가능성이 큼

- 정현순 전문위원: 저작권법 제133조의2에서 규정하는 게시판은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게시판"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임

위 사이트는 이용자가 게시물을 올릴 수 있는 구조의 게시판이 아니어서 위 법률에서 말하는 게시판이라 보기 어렵고,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B 위원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한 게시물을 직접 올린 사안이므로 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시정권 고의 대상이 되지는 않음

사이트 운영자를 위하여 서버공간을 제공 및 관리하여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호스팅사업자가 저장서비스제공자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 A 위원 : '파워볼', '스피드키노' 게임이 합법인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파워볼', '스피드키노' 게임 자체에 불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동행복권'사이트를 보여주면서)두 게임은 '동행복권'사이트에서 매5분마다 추첨하는 게임인데, '동행복권'사이트에 따르면 '㈜동행복권'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지정한 복권 수탁사업자임

심의대상 게시물을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동행복권'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함

- A 위원 : 이견 없이 웹호스팅사업자에게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안건번호 제2019-66000호~66003호는 만장일 치로 웹호스팅사업자에 대한 시정 조치의 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 결함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19-65468호~65999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제물 재생화면을 보여주면서)안건번호 제2019-65468호~65999호는 웹하드 등 사이트를 통해서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임
- B 위원: 모두 불법 복제된 음악, 프로그램, 게임, 만화, 출판, 영상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권고 가결을 해야 할 것임이 삭제된 경우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함
- A 위원 : 단순 불법복제물 전송 건이므로 시정권고 가결을 하고 이미 삭제되었거나 전송중단 된 경우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하는 데 동의함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19-65468호~65999

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 를,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조치 권고를 가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19-65467호~66003호의 게시물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건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4. 폐회 선언

o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이 제10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19년 제10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7. 16.

분과위원장 대행 임진모

위위 박성호